

## 급식소위원회 회의 내용 요약

2020.01.14.(화)

### 1.배상요구

- 현 급식외주용역업체(CJ푸레쉬웨이)가 학교와 체결한 계약기간이 2022년 7월 31일까지인 바 매각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의 배상금을 청구하기로 함. 배상요구액은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발생하게 되는 예상 매출액의 5%로 협의함.

### 2.매각이 진행될 경우

- 매각이 지연되거나 매각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을 원하는 업체가 결정될 때까지 현 급식외주용역업체(CJ푸레쉬웨이)가 급식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협의함.

- 현 급식외주용역업체(CJ푸레쉬웨이)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각을 한 업체에게 학교와 기 계약을 체결한 계약 내용 이행 및 급식실 운영 전반(한국인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, 한식 제공에 따른 조리종사자 및 조리원 수 등 현재 인원과 동일한 인원을 배치해 줄 것)에 대한 운영조건을 승계하도록 요구

- 아울러 매각이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한 개 학기(6개월)의 시영업을 실시한 이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만족도 조사 실시 및 전체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속 운영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 해지 또는 계속 운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협의함.